

제3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
[2023. 11. 22.(수) 10:00]

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1. 22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2023년 11월 22일
전문위원 장 석 현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3 - 135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6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에 따라, 2024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 취득: 1건

연번	구분	사업내용	사업부서
-	매입 · 리모델링	○ 등촌2동 주영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 - 위 치: 등촌동 522-23 - 면 적: 토지 175.2㎡, 연면적 262.2㎡ - 사업내용: 기존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구립 전환 - 소요예산: 1,630,000천원 (국 274,500천원 시 1,273,000천원 구 82,500천원)	가족정책과

- 나. 공유재산 처분: 해당사항 없음

4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

5. 검토의견

- 「등촌2동 주영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」의 건은
 - 보육수요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 내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위치는 등촌동 522-23
 -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 ~ 2024년 5월
 - 사업규모는 토지 175.2㎡와 연면적 262.2㎡ (건물 1동 지상 3층)
 - 소요예산은 총 16억 3,000만원으로 국비 2억 7,450만원, 시비 12억 7,300만원, 구비 8,2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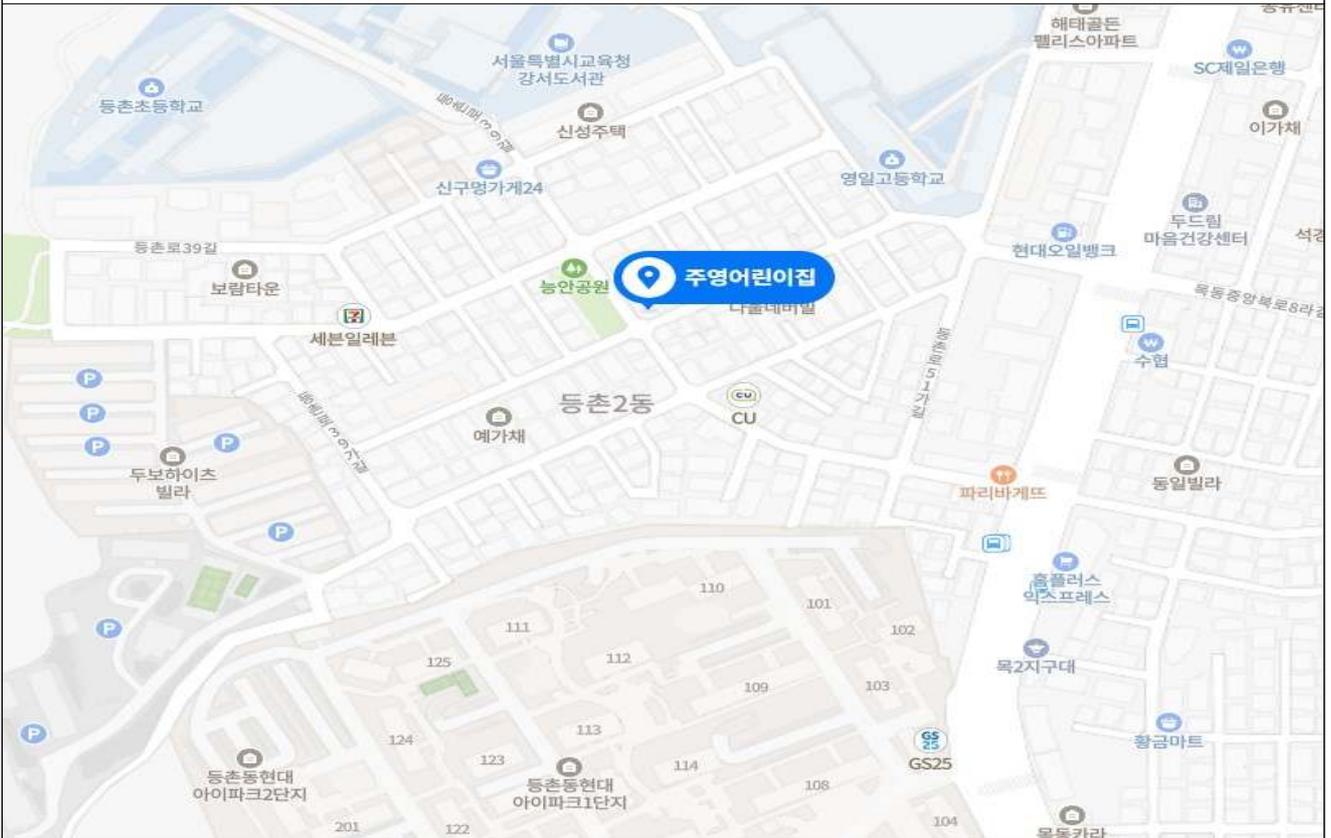
6. 종합의견

- 「등촌2동 주영어린이집 매입 구립 전환」 건은 보육수요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 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사안으로, 2023년 제2차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되었음
- 위 공유재산 취득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참고자료1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



현장사진



외부



내부

참고자료2

관계법령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

- 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
-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**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개정 2022. 4. 20.>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 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

- 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**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.
-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신설 2022.11.9.)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**
 - 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**
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